

2022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정 책 관

I 2021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1. ~ 4. 지방세지출 개관, 기본원칙, 재설계, 신설 현황 1

II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직접사용 범위 확대 (법 §2①8)	37
2. 매각·증여 정의 신설 (법 §2①8의2)	39
3.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정의 명확화 (법 §6①, 영 §3③)	40
4.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등 합리성 제고 (법 §6④, 영 §3②, ⑤, ⑥)	44
5. 용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 (법 §10①)	49
6.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 (법 §16①)	51
7.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 명확화 (법 §17①, §29④)	54
8.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 (법 §19①)	57
9.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합리화 (법 §31①)	59
10.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배제 (법 §31, §31의3)	62
11. 건설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가액기준 완화 (법 §31④, §31의3①)	69
12.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명확화 (법 §31④)	74
13.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추정 규정 강화 및 가액기준 합리화 (법 §31⑤, §31의3①, ②)	77
14. 내공사 공공매입임대 감면대상 확대 감면을 조정 일몰기한 연장 (법 §31⑥⑦, 영 §13⑤)	83
15. 매입약정 주택 건축 감면 신설 (법 §31의5)	86
16. 내 소규모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 (법 §32)	88

17.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추정요건 명확화 (법 §33②)	89
1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한도 축소 일몰기한 연장 (법 §35)	91
19.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요건 보완 (법 §36의3①)	95
20.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정요건 보완 (법 §36의3④, 영 §17의3)	98
21.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세목 축소 (법 §44의2)	102
2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초기중견기업 구간 신설 (법 §46)	104
23. 한국환경공단 감면기준 정비 (법 §47)	107
2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재설계 (법 §47의4)	109
25.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취득세 감면대상 정비 (법 §57의2③⑤)	112
26.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확대 (법 §57의2⑧)	114
27. 금융기관 간 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조정 (법 §57의2⑩)	116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신설 (법 §57의3④)	118
29.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대상 확대 (법 §65)	120
30.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법 §66①)	122
31. 경형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 (법 §67①)	125
3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법 §74의2)	127
33. 반환공여구역등에 기업등 설립시 감면 신설 (법 §75의4)	132
34.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명확화 (법 §78④, ⑦)	135
3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추정요건 완화 (법 §78⑤)	138

36.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시 감면 요건 명확화 [법 §79, §80, 규칙 §7, §8]	140
37.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 신설 [법 §88②]	145
38. 자동차체 등 세액공제 감면 확대 [법 §92의2]	147
39.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 및 신설 [법 §167의2, §167의3, 영 §116의2, 법률 제12955호 부칙 §2]	150
40.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장수특례 조문 이동 및 적용 확대 [법 §167의4, 규칙 §9]	154
41.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명확화 [법 §177의2①]	157
42. 환지계획 취득부동산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명확화 [법 §177의2①2]	160
43. 인용 법 조문 이관에 따른 정비 [법 §180의2①, ②]	163

III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한센인정착능원의 범위 변경 [영 §8의2 관련 별표]	167
2.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영 §13③]	173
3. 지방세 이자상당가산액 기산일 명확화 [영 §112의2①]	175

IV 참 고 자 료

1. 2022년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179
----------------------	-----

2021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1 지방세 지출 개관

1 개념

- ‘지방세 지출’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서 ‘비과세’와 ‘감면’으로 구분, 지방세 지출 재설계 대상은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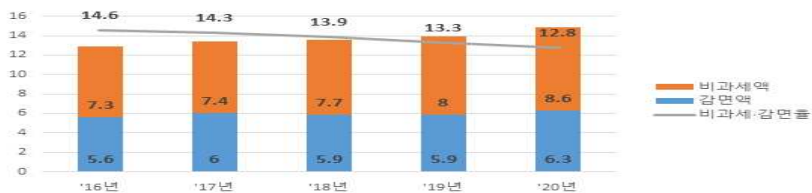
※ (비과세) 과세 제외(영구, 지방세법) ↔ (감면) 납세의무 경감(한시, 특례법)

2 현황

- 비과세·감면액은 14.9조원(감면액 6.3조), 비과세·감면율은 12.8%('20년)
 - 비과세·감면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목표* 이내로 관리('21년 13.8%)

* 직전 3개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평균 + 0.5%p

< 최근 5년간 지방세 지출 규모 및 비율 >



※ 국세 감면율 : ('16) 13.4%, ('17) 13%, ('18) 13%, ('19) 13.9%, ('20) 15.4%,

- 감면율을 법정목표 내로 관리중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 지출 증가 등 세수여건 감안 시 특례 신설·확대는 신중한 필요

※ 다만,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에 추가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

3 운영 경과

- 『2021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의결, 각 부처 통보(2.25.)
-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3.31.)
- 예타·심층평가 실시(100억원↑ 신설·일몰도래 감면, 지방세연구원, 3~7월)
 - ※ (예타, 4건) 도시재생사업 투자 부동산투자회사, 친환경 자동차 감면 확대 등 (심층, 6건) 의료기관, 학교, 임대주택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 제도개선 필요사항 관련 지자체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3~4월)
- 지방세 지출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6.30.~7.1.)

2 지방세 지출 기본 원칙

- ◇ 특례 신설·연장 판단 시 법제화된 지방세 특례 기본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1 목적의 타당성 분석

- 지방사무로서의 적정성 등 지방세 특성 고려, 지원 필요성 판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여부 등 분석 및 정비

2 세목의 적합성 평가

- 정책성격(확산·촉진/보호·지원)과 세목 특성*에 따른 지원 재설계
 - * 거래 활성화 취지인 경우 취득세 원칙, 재산세는 담세력 고려, 예외적 지원
- 특정재원 마련 목적으로 과세되는 목적세* 감면 종료 및 신설 배제
 - * 지역자원시설세(소방안전사무),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계획사업) 등

3 지원 규모의 적정성 판단

- 국세·지방세 지원, 국가보조금 등 중복여부 고려, 지출규모 결정
- 국민개세주의,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최소납부세제* 적용
 - *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는 제도
-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상, 목적 등 유사 감면은 유사 혜택 부여
- 감면대상·목적의 구체화·세분화하여 과도한 감면 배제

4 지출 방식의 최적화

- 세액공제, 중과배제 등 감면 취지에 적합한 특례 유형 설계
- 특정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출은 감면조례 활용
- 주기적 평가 및 재설계를 위해 3년 기한 원칙으로 운영

3 '21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현황

1 농·어업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자경농민 도로점용 등 면허\$6③>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종료
<② 귀농인 취득하는 농지·임야\$6④>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농업용시설) 추가,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③ 공유수면 매립 등 농지개발\$8④>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종료
<④ 농협 등 용자 담보물 등기\$10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1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2.12.31.
<⑤ 영농 등 직접사용 사업소\$10②> ○ (감 면 율) 주민세(사업소·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사업소·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24.12.31.
<⑥ 농어촌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 등\$13③>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4.12.31.
<⑦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취득\$16> ○ (감 면 율) 취득세 100% ※ 280만원 限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280만원 限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 농·어업 분야 감면에 대한 감면 지원 연장 및 재설계

- (①) 등록면허세는 행정수수료적 성격인 점,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감면 종료**
- (②) 귀농·귀촌 촉진 등을 위해 **귀농인**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일 현재 귀농인’에 해당하여야 하는 감면 요건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까지 적용토록 완화
 - 감면 대상을 농지·임야(농지조성용)뿐 아니라 **농업용 시설**까지 확대하되, 자경농민과 동일한 감면 기준(지역·면적제한 등)을 적용토록 개선, 투기 목적 취득 등은 감면 적용을 제한
- (③) 감면실적이 저조한 점, 장기간 지원된 점 등 고려, **감면 종료**
- (④) 농·수협 등의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1년)하면서,
 - 농·수협 등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용자할 때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선
- (⑤, ⑥) 농·어촌 영농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 영농·영립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사업소·종업원) 감면 연장**
 - 한국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용으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 (⑦)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 감면을 **3년 연장**하면서,
 -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을 **완화**하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취득**은 종전 요건(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을 그대로 유지

② 취약계층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장애인용 차량§17①> ○ (감 면 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u>2021.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u>2024.12.31.</u>
<② 한센인 정착농원§17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u>2021.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u>2024.12.31.</u>
<③ 사회적기업§22의4>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25%,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u>2021.12.31.</u>	☞ 감면세목(등록면허세) 축소,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4.12.31.</u>
<④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26>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u>2021.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⑤ 국가유공자 차량 § 29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u>2021.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u>2024.12.31.</u>
<⑥ 독립기념관§30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u>2021.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u>2024.12.31.</u>

< 개정내용 >

- ☐ (연장)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사회적 가치 구현 등 감안 감면 연장
- (①) 장애인 차량 감면은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자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고,
 - 취득세 **감면 적용일**을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추정 기산일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납세자 혼선 및 사후관리 불일치 개선
 - (②)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감면은 한센인의 특수성, 경제적 취약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고,
 -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1년) 내 **한센인정착농원** 지역 변경(신설·제외)에 따라 **감면 지역 현행화**(15개 시도, 총83곳 → 총86곳)
 - (③)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등록면허세 감면 종료)
 - (④) 노동조합 감면은 근로자의 권리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⑤)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유공자 예우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고,
 - 취득세 **감면 적용일**을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추정 기산일과 동일하게 일치시켜 납세자 혼선 및 사후관리 불일치 개선
 - (⑥) 독립기념관에 대한 감면은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애국심 함양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3 보육·교육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 유치원·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동산§19>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② 다자녀 양육자 취득 차량§22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③ 학교등의 직접사용 부동산 등§41①~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등록면허세·주민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일부조항(④~⑥) 종료, 그 외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등록면허세·주민세 100% ○ (일몰기한) 2024.12.31.
<④ 행복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42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주민세 사업소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주민세 사업소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⑤ 실험·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42②>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⑥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43,§44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4.12.31.
<⑦ 전공대학 직접사용 부동산§44②>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⑧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접사용 부동산§44③>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 저출산 해소, 국민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연장**
- **(①) 저출산 대응 지원 및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감면 연장**하면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직접 사용”으로 명확화
 - **(②) 다자녀 양육 차량 감면**은 차량이동과 생업활동 수단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③~⑤)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및 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학교등의 직접사용 부동산·행복기숙사·실험·실습용 차량 등에 대한 **감면 연장**
 -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등 무료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41④)은 목적세 성격, 유사 감면규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 종료**
* 정당·사회복지법인등에 전력등 무료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일몰 종료(~'19년)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 기부채납 약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41⑥)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점 고려하여 **종료**
* 종전 국립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세 납세의무 적용시 전환 이전의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로 간주(「지방세기본법」 §154)
 - **(⑥~⑧)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향상** 지원 등을 위하여 **감면 연장**

4 의료기관 지원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22⑥> ○ (감 면 율) 취득세 3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0%, <u>재산세 50%</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②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27②>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 50%</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30②>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 50%</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④국립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 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37>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 50%</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⑤의료법인§38①> ○ (감 면 율) 취득세 3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0%, <u>재산세 50%</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⑥종교단체 의료기관§38④> ○ (감 면 율) 취득세 3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0%, <u>재산세 50%</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⑦지방의료원§38의2> ○ (감 면 율) 취득세 75%, <u>재산세(5년) 75%</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u>재산세 75%</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개정 전	개정 후
<⑧국민건강증진사업자§40>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 50%</u> ○ (일몰기한) <u>2024.12.31.</u>
<⑨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40의3>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u>재산세 50%</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⑩사립대 부속병원§41⑦> ○ (감 면 율) 취득세 30%, <u>재산세(5년) 50%</u> ○ (일몰기한) <u>2021.12.31.</u>	☞ 재산세 감면 제한기간 삭제,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0%, <u>재산세 50%</u> *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10%p 추가 적용 ○ (일몰기한) <u>2024.12.31.</u>

< 개정내용 >

□ (연장)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모두 감면 적용

* (기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만 감면 적용

○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예방법(§8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 병원*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10%p 추가 적용

* (지정 현황)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21.12월 기준)

5 임대주택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임대주택 감면요건§31①> ○ (감면요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목적물로 등록	☞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합리화 ○ (감면요건) 토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6개월 이내 등록
<②임대공동주택 건축§31①> ○ (감 면 율) 60㎡ 이하 : 취득세 100%, 85㎡ 이하, 장기임대 限, 20호 이상 : 취득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60㎡ 이하 : 취득세 100%, 85㎡ 이하, 장기임대 限, 20호 이상 : 취득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③임대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분양§31②> ○ (감 면 율) 60㎡ 이하 : 취득세 100%, 85㎡ 이하, 장기임대 限, 20호 이상 : 취득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60㎡ 이하 : 취득세 100%, 85㎡ 이하, 장기임대 限, 20호 이상 : 취득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일몰기한) 2024.12.31.
<④임대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31④⑤> ○ (감 면 율) 40㎡ 이하, 30년 이상 공공주택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60㎡ 이하 : 재산세 50%, 85㎡ 이하 : 재산세 2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공동주택 : 공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추징요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요건 완화, 추징요건 강화 및 3년 연장 ○ (감 면 율) 40㎡ 이하, 30년 이상 공공주택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60㎡ 이하 : 재산세 50%, 85㎡ 이하 : 재산세 25%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공동주택 : 공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9억원 ○ (추징요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중여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⑤장기임대주택§31의3> ○ (감면대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40㎡이하) ○ (감 면 율) 4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40㎡ 초과 6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60㎡ 초과 85㎡ 이하 :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공동주택 : 공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추징요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요건 완화, 추징요건 강화 및 3년 연장 ○ (감면대상)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40㎡이하) ○ (감 면 율) 4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40㎡ 초과 6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60㎡ 초과 85㎡ 이하 : 재산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공동주택 : 공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9억원 ○ (추징요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중여 ○ (일몰기한) 2024.12.31.
<⑥임대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31④·§31의3>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⑦감면대상§31·§31의3> ○ (신설)	☞ 폐지유형 감면 배제 ○ (감면배제) '20.7.11. 이후에 '폐지 유형'으로 신규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
<⑧LH공사 공공매입임대§31⑥> ○ (감면대상) 주택 ※ 시행령 위임(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감면율 조정, 3년 연장 ○ (감면대상) 주택 및 건축물 ※ 시행령 위임(기숙사, 다중시설, 오피스텔 등 추가) ○ (감 면 율) 취득세 25%, 재산세 50%* * 매입하여 변경 또는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축물 포함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㉑LH공사 소규모 공동주택§32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율 조정,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4.12.31.
<㉒공공임대리츠§31의4> ○ (감 면 율) 취득세 20%, 60㎡ 이하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40%, 85㎡ 이하 : 15% ○ (일몰기한) 2021.12.31.	☞ 일반임대사업자와 동일한 감면 적용 ※§31·§31의3에 해당 되는 경우 감면 적용 可

< 개정내용 >

□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제도 개선 등

- (①)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 시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 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도록 완화
- (②~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하고, 수도권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가액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
 - ※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정할 수 있도록 추정요건 강화
- (⑥) 오피스텔 감면가액 기준 판단 시 ‘건축물’ → ‘건축물 및 토지’로 합리화
- (⑩) 공공임대리츠에 대하여는 일반임대사업자와 동일한 감면 적용

□ (감면대상) '20년도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을 통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임대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 (⑦) 대책발표 다음날('20.7.11.)부터 법 시행 전날('20.8.17.) 사이에 폐지유형 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장기’로 유형 변경한 경우는 감면 배제
 - ※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LH) LH 임대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일부 조정 등
 - (⑧) 공공매입임대 사업 관련, 감면 대상을 ‘주택’ → ‘주택 및 건축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율 일부 조정(50%→25%)
 - * 기숙사, 고시원, 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까지 포함
 - (⑨) 임대 목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연장하되, 감면율 일부 조정(취득세·재산세 각 50% → 각 25%)

6 주거복지

개정 전	개정 후
<①LH공사 방치건축물§32의2>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②서민주택§3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③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등기§35①> ○ (감면대상) 주택 담보 등기 ○ (감 면 율) 5억원,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그 외 : 300만원 공제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감면한도 축소, 3년 연장 ○ (감면대상) 주택, <u>주거용 오피스텔</u> 담보 등기 ○ (감 면 율) 5억원,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그 외 : 225만원 공제 ○ (일몰기한) 2024.12.31.
<④주택담보 노후연금가입 주택§35②> ○ (감면대상) 담보의 대상이 된 주택 ○ (감 면 율) 1주택 限 : 재산세 25% (공시가격 5억원 限)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3년 연장 ○ (감면대상) 담보의 대상이 된 주택, <u>주거용 오피스텔</u> ○ (감 면 율) 1주택 限 : 재산세 25% (공시가격 5억원 限) ○ (일몰기한) 2024.12.31.
<⑤민간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 주택§35③>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⑥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35의2>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⑦한국해비타트 무주택자 분양 주택§36>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사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사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⑧생애최초 주택구입§36의3> ○ (주택소유기준) <u>1가구 기준</u> ○ (감면대상) <u>20세 미만인 자 제외</u> ○ (추정사유) 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u>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u> , ③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정 ○ (상시거주)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및 추정요건 보완, 2년 연장 등 ○ (주택소유기준) <u>본인 및 배우자</u> ○ (감면대상) <u>미성년자 제외</u> ※ 민법상 성년 기준 참고 ○ (추정사유) ① <u>정당한 사유*없이</u>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u>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u> , ③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정 * 대통령령 위임 ** 배우자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정사유에서 제외 ○ (상시거주) 주택 취득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기존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취득일을 전입신고일로 간주 ○ (일몰기한) 2023.12.31.

< 개정내용 >

□ (종료) 사업실적 저조한 감면 등에 대한 종료

- (①) LH가 방치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사업실적 저조, LH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종료**
- (⑤) 민간금융 기관의 역모기지 가입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사업실적 저조 등을 고려하여 **종료**(‘18~’20년, 3년 간 총 168만원)

□ (연장)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일부 요건 개정 등

- (②)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서민주거 복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3년 연장**
- (③~④)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으로 추가
 - 다만, 공시가격 5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공제한도는 300만원 → 225만원으로 조정
- (⑥)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고령 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현행대로 3년 연장**
- (⑦) 한국해비타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무주택자 주거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3년 연장**
- (⑧)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서민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현행대로 2년 연장**하고,
 - 생애최초 판단 기준을 ‘1가구’ →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아도 추정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요건 개정**

7 문화·안전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박물관, 미술관, 과학관§44조의2>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세목(목적세) 축소,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②학술단체 고유업무 부동산§45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③장학법인(공익법인) 부동산§45②> ○ (감 면 율) -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8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 직접사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임대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80% ○ (일몰기한) 2024.12.31.
<④신문·통신사업자§51>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사업소분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사업소분 50% ○ (일몰기한) 2024.12.31.
<⑤문화·예술단체 고유업무 부동산§52>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⑥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53>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세목(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일몰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⑦내진성능확보 건축물§47의4①> ○ (감 면 율) 취득세 50~100%, 재산세(5년) 50~100% * (건축) 50%, (대수선) 10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⑧지진안전 인증 건축물§47의4③> ○ (감 면 율) 취득세 5~10% * 시행령 : 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10% * 시행령 : 5%, ○ (일몰기한) 2024.12.31.

- 재산세 감면 제외대상을 양도 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까지 확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모두 재산세 감면 제외)

- (⑧)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인증 유도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 연장
- 인증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감면 요건을 ‘취득일부터 180일 이내’로 완화

< 개정내용 >

- (①) 박물관 등 감면은 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종료)
- (②~③) 학술단체·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은 학문의 발전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④) 정보와 여론의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론 형성의 장을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⑤) 문화예술·체육 단체에 대한 감면은 문화예술 창작·진흥 활동 및 체육 사업 활성화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⑥)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필요성 인정, 감면 연장하되,
 - 목적세적 성격의 세목(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은 감면 종료
- (⑦)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강화되어 감면 실효성이 저하된 점, 유사 성격의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이 연장된 점 등 고려, 감면 종료

8 기업구조조정 분야 (단위조합 및 금융기관)

개정 전	개정 후
<①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간 합병§57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②금융기관 간 적격합병§57의2⑩>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율 축소 및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25% ○ (일몰기한) 2024.12.31.
<③농협·수협조합의 부실조합 재산 양수등 §57의3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및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조합법인 간 원활한 합병 유도를 위한 감면 연장
- (②)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율 3년 연장하되, 등록면허세 감면율은 축소(50%→25%)
- (③) 농협·수협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조합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최소납부세제 적용 및 3년 연장

9 기업구조조정 분야 (법인·개인)

개정 전	개정 후
<①법인간 적격합병§57의2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중소기업 간 합병, 기술혁신형사업 법인과 합병은 취득세 6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중소기업 간 합병, 기술혁신형사업 법인과 합병은 취득세 60% ○ (일몰기한) 2024.12.31.
<②국유재산 현물출자§57의2③1호>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4.12.31.
<③법인간 적격분할§57의2③2호>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④법인간 적격현물출자§57의2③3호>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⑤법인간 자산교환§57의2③4호>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 종료
<⑥중소기업간 통합§57의2③5호>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및 부동산임대업·공급업 감면 제외 ○ (감 면 율) 취득세 75% * 부동산임대업·공급업 감면 제외 ○ (일몰기한) 2024.12.31.
<⑦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의 조직변경 §57의2③7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⑧개인의 법인전환§57의2④>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⑨과점주주 간주취득세§57의2⑤>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⑩사업재편승인기업§57의2⑧> ○ (감면대상) 과잉공급업종 기업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및 3년 연장 ○ (감면대상) 과잉공급업종 기업, <u>신산업 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u>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⑪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가기관 대행 등 §57의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 (①~⑨) 기업 구조조정 등 관련,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세 감면을 현행대로 3년 연장하되,
 - 중소기업 간 통합 시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감면 대상 제외
- (⑩) 사업재편승인기업에 대한 감면은 관계 법률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19.8월)됨에 따라
 - 감면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 뿐만 아니라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기업’ 까지 확대하여 3년 연장
- (⑪)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을 대행하여 의뢰·수입 받은 재산의 매입에 대한 감면은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3년 연장

⑩ 수송·교통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국제선박§64①> ○ (감 면 율) 취득세 △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②연안항로취항외국항로취항용 선박§64②> ○ (감 면 율) 취득세 △1%p, 재산세* 50% *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은 5년간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p, 재산세* 50% *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은 5년간 한정 ○ (일몰기한) 2024.12.31.
<③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천연가스)§64③>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4.12.31.
<④항공운송사업§65> ○ (감 면 율) 취득세 △1.2%p, 재산세 5년간 50% *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재산세 감면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2%p, 재산세 5년간 50% *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재산세 5년간 50% 감면 (~2023.12.31.) ○ (일몰기한) 2024.12.31.
<⑤교환자동차§66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중전 자동차 가액 초과시 취득세 부과) - (교환 자동차 취득가액 - 중전 자동차 취득가액)×세율 ○ (일몰기한) 2021.12.31.	☞ 취득세 부과 시 산정방식 개선 ○ (감 면 율) 취득세 100%(중전 자동차 가액 초과시 취득세 부과) - 교환 자동차 부과될 세액 - 중전 자동차 납부세액 ○ (일몰기한) 2024.12.31.
<⑥하이브리드 자동차§66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1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2.12.31.
<⑦전기·수소 자동차§66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4.12.31.
<⑧경형자동차(승용)§67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5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한도 확대 및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75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⑨경형자동차(승합·화물)§67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⑩전방조종자동차§67③> ○ (감 면 율) 자동차세 65,000원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자동차세 65,000원 ○ (일몰기한) 2024.12.31.
<⑪매대용 중고자동차 등§68①> ○ (감 면 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⑫수출용 중고 선박기계장비항공기§68③>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4.12.31.
<⑬수출용 중고자동차§68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⑭운송사업용 버스·택시§70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⑮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70③>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4.12.31.
<⑯운송사업용 전기·수소 버스§70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 (연장) 친환경자동차,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①~③) 국제선박 등에 대한 감면은 해운산업 경쟁력, 국적선 확보, 해양 환경오염 저감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
 - (⑥~⑦) 친환경자동차 관련,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현행대로 3년 연장하고,
 -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국세(개별소비세) 감면 1년 연장된 점 등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도 현행대로 1년 연장
 - (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 보유한 생계형 차량인 점 등 고려하여 현행대로 3년 연장
 - (⑪~⑬) 매대용·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은 시장 활성화 업계 지원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3년 연장
 - (⑭~⑯) 운송사업용 버스·택시 등에 대한 감면은 대중교통의 공익성 고려하여 현행대로 3년 연장
-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어려움,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감면 확대
- (④)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 대형항공사(자산 5조 이상)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재신설(2년)
 - (⑧~⑨) 경형자동차(승용·승합화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 비영업용 승용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 → 75만원으로 확대
- (제도개선) 자동차 교환 시 취득세 부과 방식 관련, 과소납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정방식 합리화(⑤)*

* 부과세액 = (교환 자동차에 부과될 세액 - 종전 자동차 납부세액)

11 국토·지역개발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①반대급부 기부채납 부동산§73의2>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②위기지역내 중소기업 등§75의3>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5년) 50% ○ (일몰기한) 2024.12.31.
<③산업단지§78④,⑤,⑦> ○ (감면대상)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 -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공장용 건축물 포함 ○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감면대상 명확화 및 추징요건 완화 ○ (감면대상)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19.1.1. ~ '20.12.31. 기간에 취득한 경우는 4년
<④법인의 지방이전§79> ○ (감 면 율) 취득세·100%, 재산세 (5년) 100%, (3년)50%, 등록면허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 대도시 외 지역 법인 이전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및 감면요건 통일 ○ (감 면 율) 취득세·100%, 재산세 (5년) 100%, (3년)50%, 등록면허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법인 이전 ○ (일몰기한) 2024.12.31.
<⑤공장의 지방이전§80> ○ (감 면 율) 취득세·100%, 재산세 (5년) 100%, (3년)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대도시 → 대도시 외 지역 공장 이전 ○ (일몰기한) 2021.12.31.	☞ 3년 연장 및 감면요건 통일 ○ (감 면 율) 취득세·100%, 재산세 (5년) 100%, (3년)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요건)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장 이전 ○ (일몰기한) 2024.12.31.
<⑥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 이주 감면§81의2> ○ (감 면 율) 취득세 62.5~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62.5~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개정 전	개정 후
<⑦개발제한구역내 주택 개량 감면§82> ○ (감 면 율) 재산세 (5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4.12.31.
<⑧시장경비사업에 대한 감면§83>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4.12.31.
<⑨사권제한토지(도시계획시설)§84①> ○ (감 면 율) 재산세 50%, 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4.12.31.
<⑩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철도안전법)§84②·③>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⑪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180의2>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인용조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 (일몰기한) 2021.12.31.	☞ 현행 3년 연장 및 인용조문 정비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인용조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 (연장) 지역경제활성화·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연장
- (①)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민간투자(BTL·BTO) 활성화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
 - (②)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

- (④, ⑤) 법안·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하고,
 - 감면요건을 ‘대도시에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으로 통일
- (⑥)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면은 협정·국가 정책에 의해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
- (⑦)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은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
- (⑧)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입점상인에 대한 감면은 영세 상인 등 지역상권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
- (⑨, ⑩)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도시·군계획시설 등 공공 목적에 의하여 재산권이 제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
- (⑪) 부동산투자기관에 대한 감면은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투자 수단 제공 등 정책목표 고려하여 **현행수준으로 3년 연장**
- (제도개선 등) 산업단지 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 (③) 산업용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등 혼재된 용어를 ‘산업용 건축물’로 통일하고,
 - ‘19~’20년 사이에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징요건을 4년 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완화**

12 지방소득세 특례

개정 전	개정 후
<①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167의2> ○ (감 면 액)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 10% ○ (일몰기한) <u>2021.12.31.</u> ※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현행 2년 연장 ○ (감 면 액)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 10% ○ (일몰기한) <u>2023.12.31.</u> ※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②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167의3>	☞ 감면 신설 ○ (감 면 액) 2천원(종합소득 확정신고자·양도 소득 예정신고자·모두채움납부자) ※ 확정신고 예외자(min) : 결정세액 또는 1천원
<③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167의3> ○ (감면내용) 가산금 면제	☞ 조문 이동(§167의4), 적용 확대 ○ (감면내용)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개정내용 >

- (①)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신설(§167조의3)에 따라 개인지방 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규정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외 및 감면 2년 연장
- (②)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되도록 감면 규정 신설
- (③)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에 대해 조문 이동(§167조의3 → §167조의4) 및 특례 범위 확대(당초 가산금 → 확대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기타

개정 전	개정 후
<①직접사용 범위§2①8> ○ (직접사용) 소유자 + 목적에 맞게 사용	☞ 직접사용 범위 확대 ○ (직접사용) 소유자 및 <u>수탁자</u> + 목적에 맞게 사용
<②정의 신설§2①8의2> ○ (신설)	☞ 매각·중여 정의 규정 ○ 지방세 감면 추정사유인 ‘매각·중여’ <u>정의 규정</u> -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은 시행령 위임 ○ (시행시기) 2023년 1월1일
<③광업권§62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u>2021.12.31.</u>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u>2024.12.31.</u>
<④광업권§6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1.12.31.</u>	☞ 감면 종료
<⑤자동이체 세액공제§92의2> ○ (감 면 액) (택 1) <u>150원~500원</u> (병행) <u>300원~1,000원</u>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감면 확대 ○ (감 면 액) (택 1) <u>250원~800원</u> (병행) <u>500원~1,600원</u>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⑥환지계획 취득부동산§177의2①2>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⑦「지방세법」 개정 > ○ (§31②) 「지방세법」 제10조 ○ (§36의2①3호) 「지방세법」 제10조	☞ 인용조문 변경 ○ (§31②) 「지방세법」 제10조의3 ○ (§36의2①3호) 「지방세법」 제10조의3 ※ '23.1.1.부터 시행
<⑧ 지방농수산물공사 등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법률 제15295호 부칙§7>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 <u>2022. 1. 1.</u>	☞ 현행 1년 연장 ○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 <u>2023. 1. 1.</u>

< 개정내용 >

- ① 「지방세법」 개정(‘20.12월)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소유자)가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 수탁자가 그 재산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더라도 **직접사용**으로 보아 감면 적용되도록, **직접사용 범위를 확대**
- ② 지방세 감면 추정 사유인 ‘매각·증여’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여 혼선을 해소하되, (예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 준비 등을 고려하여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③, ④ 광업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는 영세한 광업권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하되,
 - 출원에 의한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 취득세 감면은 감면 실적이 저조하여(‘16~’20년 간 실적 없음) **감면 종료**
- 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세액공제에 대해 납세자 혜택 및 세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제 범위 확대**
- ⑥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 시 유사사례(토지수용·천재지변 등)와의 일관성·통일성을 위하여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⑦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지방세법」 개정 시행시기에 맞춰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⑧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시점을 유예**하되, 일몰 도래(‘22년)시 감면 타당성 여부 등의 종합검토를 위하여 **1년만 유예**

4 202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신설·확대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 (목적) 공공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 (대상) 주택 → 주택 및 건축물* * 시행령 위임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기숙사, 다중시설, 오피스텔 등 추가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50% → 취득세 25%, 재산세 50%* * 매입하여 변경 또는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축물 포함 ※ ⑤ 임대주택 분야 중 ⑧과 중복	제31조제6항 (2024.12.31)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 체결한 자	▪ (목적)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할 수 있도록 매입약정* 주택 건축 활성화 * 민간건설사가 신축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가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 공급 형태 ▪ (대상) 임대 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①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② 완공 후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 ▪ (감면내용) 취득세 10%	제31조의5 (2022.12.31)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록면허세 대상 확대	▪ (목적) 주택연금을 받는 노인계층 부담 완화 ▪ (대상) 주택담보 등기 → 주택, <u>주거용 오피스텔</u> 담보 등기 ▪ (감면내용) 5억원, 1주택 : 등록면허세 75%. <u>그 외 : 300만원 공제 → 5억원,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그 외 : 225만원 공제</u> ※ ⑥ 연금주택 등 분야 중 ①과 중복	제35조제1항 (2024.12.31)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재산세 대상 확대	▪ (목적) 주택연금을 받는 노인계층 부담 완화 ▪ (대상) 담보대상 주택 → 담보대상 주택, <u>주거용 오피스텔</u> ▪ (감면내용) 1주택 限 : 재산세 25%(공시가격 5억원 限) ※ ⑥ 연금주택 등 분야 중 ②과 중복	제35조제2항 (2024.12.31)

⑤ 연구개발지원 감면(중견기업 구간 신설)	▪ (목적) 초기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 (감면내용) 초기중견기업 : 취득세·재산세 50% (신성장·원천 60%) ※ 현행 감면율은 기업규모별 취득세·재산세 35~70%	제46조제3항 (2022.12.31)
⑥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 (목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 그 자산을 재취득 ▪ (감면내용) 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57조의3제4항 (2023.12.31)
⑦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 (목적)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 ▪ (대상)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취득 부동산 ▪ (감면내용) ① (수용)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 수용 시 취득세 50%~100% 감면, ② (주택 준공)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축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③ (주택 분양) 종전 대비 초과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50~75% 감면* * 전용면적 60㎡ 이하 : 75% 감면, 60㎡ 초과~85㎡ 이하 : 50% 감면	제74조의2 (2024.12.31)
⑧ 반환공여구역 감면	▪ (목적)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상) 반환공여구역등에 창업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u>취득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u>	제75조의4 (2025.12.31.)* * 2023.1.1.시행
⑨ 한국자유총연맹 지방세 감면	▪ (목적) 시민의식 교육 등 공익적 기능 수행 지원 ▪ (대상) 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u>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u>	제88조제2항 (2022.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직접사용 범위 확대(법 §2①8)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직접사용 범위 ○ 소유자 + 목적에 맞게 사용	□ 직접사용 범위 확대 ○ 소유자 및 <u>수탁자</u> + 목적에 맞게 사용

□ 개정내용

- 「지방세법」 개정으로('21.1.1.~)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소유자)가 **위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 소유자(위탁자)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도록 범위 확대

♦ 직접 사용 = (현행) 소유자 + 목적에 맞게 사용
⇒ (개정) 소유자 및 수탁자 + 목적에 맞게 사용

□ 적용요령

- 수탁자가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필요하며,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7. (생 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u>소유자</u> 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 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 ----- --- <u>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 ----- -----.

2 매각·증여 정의 신설(법 §2①8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매각·증여 정의 신설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

☐ 개정내용

- 추정요건인 ‘매각·증여’의 정의를 법률에서 명시하고, ‘매각·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추정 대상 명확화

☐ 적용요령

- 시행령 위임사항(매각·증여 예외사항) 준비 등을 고려하여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생략) <신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8의2. “매각·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3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정의 명확화(법 §6①, 영 §3③)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대상 농지요건 ☐ (기준) 공부뿐 아니라 이용 현황까지 모두 농지인 토지 ☐ (취득원인) 상속·유상취득 限	☐ 감면대상 농지요건 명확화 ☐ (기준) 좌 동 ☐ (취득원인) 증여 등 소유형

☐ 개정내용

- ‘농지’는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명확화
 -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지방세법상 농지로 구분된 취득세율(지방세법 §11①1가목·7가목)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른 혼란 방지하고자 함
- ※ 지방세법 §11① 부동산 취득세율

법규정	취득 원인	농지	농지외
§11①1	상속(무상)	2.3%	2.8%
§11①2	증여(무상)	3.5%	
§11①3	원시취득	2.8%	
§11①7	기타(유상)	3.0%	4.0%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구분	현행	개선
감면요건	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	공부·현황 농지 충족시
근거법령	지방세법 §11	지방세법 시행령 §21
적용대상 (취득원인)	상속·유상 限	全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등 합리성 제고(법 §6④, 영 §3②,⑤,⑥)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요건 ○ (주소 전입) <u>취득 전까지</u>	☐ 감면요건 완화 ○ <u>취득 후 60일 이내까지</u> 인정
☐ 감면대상 ○ 농지·농지조성용 임야 ※ 지역 및 면적 제한 無	☐ 감면대상 합리성 제고(=자경농민) ○ + <u>농업용 시설 추가</u> ※ 지역 및 면적 제한 有

□ 개정내용

- 귀농인*의 농지등 취득에 대한 감면 적용시, 귀농인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대상 확대·정비 등을 통해 감면 합리성 제고

* 농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하려는 자

- (감면요건 완화) 취득 후 일정기간(60일이내)내에 주소를 전입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완화
- (감면대상 정비) 농업용 시설*에도 감면을 적용토록 확대하되, 지역·면적제한 등은 자경농민 감면과 동일하게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등	농지등 + 농업용 시설
감면제외	-	지역 및 면적 제한**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

** 투기 목적 또는 부농인의 취득에 대한 감면 제한 취지

참고 자경농민·귀농인 농지등 감면적용 요건(시행령 §3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당시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귀농인이 된 지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u>직접 경작할 목적으로</u> 대통령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 ----- ----- ----- <u>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u>

개정 전	개정 후
으로 정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략)	<u>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u> ----- ----- <u>농지, 「농지법」 등</u> <u>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 1. ~ 4. (현행과 같음)

<부칙>

- 제3조(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귀농인이 된 지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u>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u>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u> -----

개정 전	개정 후
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 각각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 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⑥ ----- ----- ----- ----- ----- -----.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 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1. ----- ----- ----- 제7항----- ----- ----- -----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 제7항----- ----- -----

개정 전	개정 후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 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 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 한 날을 말한다.	⑦ ----- ----- ----- 제6항----- ----- -----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5 용자 감면대상 농어업인 정의 명확화(법 § 10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대상 ☐ (농어업인) 정의·기준 부재 ※ 실무 혼선 및 악용 우려	☐ 감면대상 정비·명확화 ☐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된 자 限

□ 개정내용

- 농어업 관련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농어업인에게 용자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한해 감면 적용토록 개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여야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 지원 可

- 타 업종 영위 등을 목적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감면받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① -----

개정 전	개정 후
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 ----- ----- -----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요건(①+②) ①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시작 ② <u>취득일 현재 해당지역 주민</u> ※ (과밀권역) 취득일前 1년이상 주민	☐ 감면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u>요건 삭제</u> ※ 과밀권역은 동일 유지

- 취득세 면제대상인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한 적용 요건 완화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사업에 선정된 자
-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 당시에는 주소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감면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 (법§16②1)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추정토록 규정
 -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의 거주요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증명
- 시행령 개정은 법률 규정상 단서 신설에 따른 단순 변경사항임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으로 선정된 <u>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u> 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u>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u>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 ----- ----- <u>사람이 주택개량 사업 계획</u> ----- ----- ----- ----- ----- ----- ----- ----- ----- ----- ----- <u>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u>2024년 12월 31일</u> ----- . 다만, 과밀

개정 전	개정 후
한다. <단서 신설>	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

7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 명확화 [법 § 17①, § 29④]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 적용일) 취득일 ☐ (감면내용) 취득세·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1.12.31.	☐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일 변경 및 연장 ☐ (감면 적용일 기준 변경) 등록일* * 감면 적용일과 추정일 기준 일치 ☐ (감면내용) 좌 동 ☐ (일몰기한) 24.12.31.

☐ 개정내용

- 장애인·국가유공자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을 현재 ‘취득일’ (취득하는)에서 **감면·추정 요건 등과 일치하도록 ‘등록일’(취득하여 등록하는)로 명확화** 및 일몰 기한 3년 연장

규정	감면대상	주요 감면요건	주요 추정요건	감면적용일 / 추정기산일	
				현행	개정
§17① §29④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국가유공자등) 본인 명의 등록 또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형제 등과 공동명의 등록	등록일 1년 내 세대 분리 등	취득일 / 등록일	등록일 / 등록일
§22-2	다자녀 양육자	3자녀(18세 미만) 이상 양육자 (공동) 명의 등록	등록일 1년 내 소유권 이전	등록일 / 등록일	등록일 / 등록일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 55 -

- 56 -

8 어린이집·유치원 직접사용 규정 명확화(법 § 19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유치원등 취득세 감면대상 ☐ 유치원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 ※ 임차인을 통해 사용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 우려	☐ 감면대상 명확화 ☐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 ※ 취득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토록 명확화

□ 개정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이하 “유치원등”) 부동산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
 - 유치원등의 취득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지원 규정임에도,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지 않음에 따른 혼란** 방지
- * (법§2①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 **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법제처21-0469)
- 유치원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 유치원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토록 명확화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과세실무는 동일 유지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 ----- 2024년 12월 31일-----.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 2024년 12월 31일-----.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9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합리화[법 §31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요건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	☐ 감면요건 합리화 ☐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 ※ 단, 토지 취득일부터 최대 1년6개월 이내에는 임대 등록 필요

□ 개정내용

- 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세 감면 요건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로 완화
- 다만, 과도한 착공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등록 시한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마련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

개정 전	개정 후
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

개정 전	개정 후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④ -----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 ----- -----

개정 전	개정 후
	----- 2024년 12월 31일----- -----. -----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 ----- 「지방세법」 제4조----- ----- ----- ----- ----- -----.
1.~3. (생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3. (생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개정 전	개정 후
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전	개정 후
	----- ----- ----- ----- ----- 2024년 12월 31일----- -----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 ----- ----- ----- 「지방세법」 제4조-----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1 건설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가액기준 완화법 §31④, §31의3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건설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가액기준 ☐ (수도권)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가액기준 완화 ☐ (수도권) 6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9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내용

-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가액기준을 6억원→9억원으로 완화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③ (생략) ④ ----- -----임대용 공동주택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 ----- ----- 2024년 12월 31일----- ----- -----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

개정 전	개정 후
	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 ----- 「지방세법」 제4조----- ----- ----- ----- -----.
1.~3. (생략)	1.~3. (생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개정 전	개정 후
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제외한다]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 ----- ----- ----- ----- ----- ----- ----- 2024년 12월 31일----- -----.

개정 전	개정 후
	----- 3억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 ----- ----- ----- 「지방세법」 제4조-----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2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명확화[법 §31④]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면적별로 재산세 차등 감면 ☐ (40㎡ 이하인 30년 이상) 면제 ☐ (60㎡ 이하) 50% 감면 ☐ (85㎡ 이하) 25% 감면	☐ 면적 구간 명확화 ☐ (40㎡ 이하인 30년 이상) 좌동 ☐ (60㎡ 이하) 좌동 ☐ (60㎡~85㎡ 이하) 좌동

☐ 개정내용

- 60㎡ 이하 임대주택은 50% 감면, 85㎡ 이하 임대주택은 2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 60㎡ 이하 임대주택은 50% 감면, **60㎡~85㎡**인 임대주택은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구간을 명확화

※ 40㎡ 이하인 경우는 면적 요건 뿐 아니라 임대기간(30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60㎡ 이하 50% 감면 구간은 현행 유지 필요
 (예 : 40~60㎡이하 50% 감면으로 수정 시, 임대기간 30년 미만인 35㎡ 주택은 50%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됨)

☐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전	개정 후
① ~ ③ (생 략)	① ~ 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 ----- 2024년 12월 31일----- ----- -----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

개정 전	개정 후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 ----- 「지방세법」 제4조-----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 ----- ----- -----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 ----- -----.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추정 규정 강화 및 가액기준 합리화 [법 §31⑤, §31의3①, ②]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추정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추정요건 강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 <u>의무 기간 내 매각·중여</u>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개정내용

- (추정요건 강화) 임대 기간 내 매각·중여하는 경우도 추정대상으로 규정
- (가액기준 합리화) 오피스텔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 1)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2)부속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가액 기준 설정

구 분	시가표준액 판단	
	기존	개정
토 지	× (지방세법 §4①)	○ (지방세법 §4)
건축물	○ (지방세법 §4②)	

□ 적용요령

- (추정요건 강화)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제31조제5항, 제31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전 규정 적용
- (가액기준 합리화) ①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②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개정 전	개정 후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2024년 12월 31일----- -----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 「지방세법」 제4조-----
1. ~ 3. (생략)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1. ~ 3. (생략) ⑤ -----

개정 전	개정 후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u>말소된</u>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2. (생 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u>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u>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u>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u>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 <u>말소되거나</u>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는 --. -----. 1. 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 <u>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u>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u>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u>] --- <u>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u>[<u>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u>

개정 전	개정 후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4조-----

개정 전	개정 후
1. ~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u>말소된</u>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 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2.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u>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 는</u> ----- ---. -----. 1. 2. (현행과 같음)

〈부칙〉

■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 및 제3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4조”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내공사 공공매입임대 감면대상 확대, 감면을 조정, 일몰기한 연장 [법 §31⑥·⑦, 영 §13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LH공사 공공매입임대 감면 ☐ (감면대상) 주택 ※ 시행령 위임(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감면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감면을 조정, 일몰기한 연장 ☐ (감면대상) 주택 및 건축물 ※ 시행령 위임(기숙사, 다중시설, 오피스텔 등 추가) ☐ (감면내용) 취득세 25% 재산세 50%* * 매입하여 변경 또는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축물 포함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감면대상 확대)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매입임대 대상으로 확대된 공공준주택 및 건축물까지 감면대상 확대

< 공공매입임대 대상 확대에 따른 주요 확대 대상 >

기존	확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종교집회장 등) 등 추가

- (감면율 조정) 기존 취득세·재산세 50% → 개정 취득세 25%, 재산세 50%*
 * 매입하여 변경 또는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축물 포함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단,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2. (생략) <신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⑥ ----- ----- ----- ----- ----- -----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 2024년 12월 31일-----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부칙>

■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 ③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료의 기간 내 분상 등)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료의 기간 내 분상 등)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참고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주택

제4조(공공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 주택법 상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참고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 주택 또는 건축물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15 매입약정 주택 건축 감면 신설(법 §31의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임대 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①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 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② 완공 후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 ○ (감면내용) 취득세 10% ○ (일몰기한) 2022.12.31.

□ 개정내용

- 임대 목적 주택을 건축하여 LH 등에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 ①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또는 멸실 목적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및
 - ② 완공 후 건축물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 감면 신설**(~22년 말)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6조)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 법률 부칙

6조(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16 내 소규모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법 § 3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소규모 임대공동주택 지방세 감면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1.12.31.	☐ 감면율 축소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4.12.31.

□ 개정내용

- LH가 취득하는 소규모 임대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50%→25%)하고 일몰기한을 연장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③ (생 략)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 ----- ----- ----- ----- ----- 100분의 25----- 2024년 12월 31일-----. ②·③ (현행과 같음)

17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추정요건 명확화 [법 § 33②]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상시거주 의미 ☐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상시거주 의미 명확화 ☐ 주택 취득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기존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취득일을 전입신고일로 간주

☐ 개정내용

- ‘상시거주’의 의미를 ‘주택을 취득한 이후’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차로 거주하던 기간은 상시거주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략) ② <u>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③ (생략)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③ (현행과 같음)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등기 (§35①) ○ (감면대상) 주택담보 등기 ○ (감면내용) 5억원, 1주택 : 등록 면허세 75%. <u>그 외 : 300만원 공제</u>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감면한도 축소, 일몰기한 연장 ○ (감면대상) 주택, <u>주거용 오피스텔</u> 담보 등기 ○ (감면내용) 5억원, 1주택 : 등록 면허세 75%. <u>그 외 : 225만원 공제</u> ○ (일몰기한) 2024.12.31.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주택 (§35②) ○ (감면대상) 담보 대상 주택 ○ (감면내용) 1주택 限 : 재산세 25% (공시가격 5억원 限)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일몰기한 연장 ○ (감면대상) 담보 대상 주택 및 <u>주거용 오피스텔</u> ○ (감면내용) 1주택 限 : 재산세 25% (공시가격 5억원 限)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확대(주거용 오피스텔 추가)하며, 등록면허세 감면한도를 조정*

〈 공시가격 5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공제한도 구간 등 조정 〉

(기존) 세액 400만원 초과 시 300만원 공제
→ (조정) 세액 300만원 초과 시 225만원 공제

적용요령

- **(기본방향)**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부터 적용
- **(등록면허세 감면한도 조정)**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7조)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u>주택을 담보로</u>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감면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u>준주택</u>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u>오피스텔</u>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 - <u>2024년 12월 31일</u> -----

개정 전	개정 후
다.	--.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2. -----
가.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가. ----- 300만원-----.
나.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한다.	나. ----- 300만원----- 225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 ----- ----- 2024년 12월 31일-----.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 시가표준액-----

개정 전	개정 후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2. 시가표준액----- -----시 가표준액-----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u>1가구</u> 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사실 판단	☐ <u>본인 및 배우자</u> 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사실 판단
☐ <u>20세 미만인 자</u> 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u>미성년자</u> 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민법상 성인 기준 참고

□ 개정내용

- (생애최초 판단기준) 기존의 ‘가구 전체’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완화
 - 가구 내의 다른 구성원(형제자매 등)이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취득세 감면 가능
- (제외대상 연령 조정) 「지방세법」, 「민법」 등 관련 법률 규정사항과 동일하게 ‘미성년자’로 규정

※ (참고사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 ----- ----- ----- ----- ----- ----- ----- ----- ----- 「지방세법」 제10조의3----- ----- ----- ----- ----- -----

개정 전	개정 후
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u>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u>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u>	----- ----- ----- ----- 2023년 12월 31일----- ----- ----- .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u>”란-----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20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정요건 보완(법 § 36의3④, 영 § 17의3)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정	☐ <u>정당한 사유없이</u>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정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u>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u> 추정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u>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u> 추정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u>매각·증여</u> 하는 경우 추정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u>매각·증여</u> 하는 경우 추정 ☐ 단, 배우자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u>매각·증여</u> 하는 경우는 추정사유에서 제외
☐ 상시거주의 의미 ☐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상시거주의 의미 명확화 ☐ <u>주택 취득 이후</u>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 기존에 전입신고가 된 경우 취득일을 전입신고일로 간주

□ 개정내용

- (상시거주 예외사유)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 등 ‘**정당한 사유***’(시행령 위임)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추정 제외

* (시행령 상 정당한 사유)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기존 임차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는 경우, 현재 임차로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 (상속에 대한 추정 제외) 감면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에 대하여는 추정 사유에서 제외
- (배우자 간 소유권 변동 인정) 배우자 간 지분의 매각·증여는 추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외 인정
- (상시거주 기산일 명확화) ‘상시거주’의 의미를 ‘주택을 취득한 이후’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차로 거주하던 기간은 상시거주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적용요령

- (기본방향)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12조)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 -----.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개정 전	개정 후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3. ----- ----- -----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 법률 부칙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세목 축소(법 § 44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감면 ☐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1.12.31.	☐ 감면연장 및 감면세목 조정 ☐ 취득세·재산세 1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종료 ☐ (일몰기한) 24.12.31.

☐ 개정내용

-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필요성 등을 위해 감면을 연장하되, 목적세적 성격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감면은 **종료**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	① ----- ----- ----- ----- ----- ----- -----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생략) <신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 3.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1. ~ 3. (현행과 같음)

<부칙>

■ 법률 부칙

제8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

초기중견기업(조특법 인용 조문)

규정	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조제1항 제1호가목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한국환경공단 부동산 ○ (감면기준) 「한국환경공단법」 §17⑪11·<u>15·16</u>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 (감면내용) 취득세 25% ○ (일몰기한) 22.12.31.	☐ 감면기준 정비 ○ (감면기준) 「한국환경공단법」 §17⑪11·<u>21·22</u>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 (감면내용) 개정 전과 같음 ○ (일몰기한) 개정 전과 같음

□ 개정내용

- 한국환경공단의 감면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를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① 11, 15, 16호에 따른 사업으로 지특법에서 규정(제47조제2호)하고 있으며,
- 「한국환경공단법」 개정(2012.5.23.)에 따라 **각 호가 이동(15, 16호 → 21, 22호)**됨에따라 이동사항에 대해 **현행화**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 한국환경공단 수행 사업

개정 전	개정 후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타법개정]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제11446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0. (생략)	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0. (생략)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1. 재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및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의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
12. ~14. (생략)	12. ~20. (생략)
15. 제4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21. 제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 시험·연구, 통계관리, 정보화, 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의 관리·감독·감리
16.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22. 환경오염방지 및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
17. ~19.(생략)	23. ~25.(생략)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illegible]

24

1

개정 전	개정 후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법§47의4①) ○ (재산세 감면 제외대상) 건축물을 양도받은 경우	☐ 감면 종료 ○ (재산세 감면 제외대상) 건축물의 <u>소유권이 이전</u> 된 경우
☐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법§47의4③) ○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인증을 받은 경우 감면	☐ 감면 연장 및 감면요건 완화 ○ 취득일부터 <u>180일 이내</u> 인증을 받은 경우 감면

☐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을 종료하되, 재산세 감면 제외대상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 개정*

* (기존) 양도받은 경우(유상취득) → (개정)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유·무상 모든 취득)

-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을 3년 연장하면서, **‘취득일부터 180일 이내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적용

☐

-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이 법 시행('22.1.1.) 당시 인증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

2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 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u>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u>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u>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u> <u>이전된 이후의</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u>100일</u>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	③ ----- ----- ----- ----- ----- 180 일 ----- ----- -----

개정 전	개정 후
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024년 12월 31일-----, ----- ----- -----, -----

<부칙>

■ 법률 부칙 제9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25 중소기업 간 통합 시 취득세 감면대상 정비(법 §57의2③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중소기업 간 통합 감면 ○ (감면내용)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정비 및 일몰기한 연장 ○ (감면내용) 취득세 75% ※ 부동산임대업·공급업 감면 제외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을 위한 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 ----- 2024년 12월 31일 ----- -----, ----- -----

개정 전	개정 후
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1년 12월 31일</u>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u>사업용 재산</u>.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 ----- <u>2024년 12월 31일</u>----- ----- ----- ----- 1. ~ 4. (생략) 5. ----- <u>사업용 재산</u>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26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확대(법 §57의2⑥)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사업재편 승인기업 ○ (감면대상) 과잉공급 해소위한 사업재편 기업 ○ (감면내용)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감면대상) 과잉공급 해소위한 사업재편기업, <u>신산업 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u> ○ (감면내용)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관련 법 개정**으로 대상기업이 확대되어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
- (감면대상) ^{기존} 과잉공급해소 위한 사업재편 기업 → ^{확대} **신산업 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 참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1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같은 법 제10조 ----- -----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 ----- ----- -- .

27 금융기관 간 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조정(법 § 57의2^⑩)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 ☐ (감면내용)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u>2021.12.31.</u>	☐ 감면을 조정 및 일몰기한 연장 ☐ (감면내용)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25% ☐ (일몰기한) <u>2024.12.31.</u>

□ 개정내용

- 금융기관 간 합병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 감면율을 조정(50%→25%)

적용요령

- **(기본방향)**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일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면허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0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13조)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⑩ ----- ----- ----- ----- ----- ----- -- 2024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100분의 25 -----, - ----- ----- ----- ----- ----- -----.

<부칙>

■ 법률 부칙

제13조(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아 등기하는 재산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면허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0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신설(법 § 57의3④)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 (감면내용)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3.12.31.

□ 개정내용

-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② 중소기업은 해당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매입

-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자산을 재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 (~'23.12.31.) 신설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에도 적용(부칙 제10조)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u><신 설></u>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u>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u>

<부칙>

■ 법률 부칙

제10조(중소기업의 자산 재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29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대상 확대 (법 § 6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항공기 감면 ☐ (감면내용) 취득세 △1.2%p, 재산세 50%* (취득 후 5년)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감면배제 ☐ (일몰기한) <u>2021.12.31.</u>	☐ 감면대상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감면내용) 취득세 △1.2%p, 재산세 50% (취득 후 5년) ☐ (일몰기한) <u>2024.12.31.</u> * <u>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5년) 50% 감면 : ~ 2023.12.31.</u>

☐ 개정내용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항공사까지 확대**
 - 단, 자산 5조이상 대형항공사에 대한 항공기 재산세 감면 확대·재신설 규정은 **일몰기한을 2년으로 한정**(~'23.12.31.)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 ----- ----- 2024년 12월 31일----- ----- ----- ----- ----- ----- ----- ----- ----- .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교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가 부과 시 산정방식 ○ <u>(교환 자동차 취득가액 - 종전 자동차 취득가액) × 세율</u>	산정방식 개선 ○ <u>교환 자동차 부과될 세액 - 종전 자동차 납부세액</u>

- 교환자동차 취득세 과소 납부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산정 기준 개선
 - (기존) (교환 자동차 취득가액 - 종전 자동차 취득가액) × 취득세율
 - (개정) 교환 자동차 부과될 세액 - 종전 자동차 납부세액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① -----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
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	-----
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	-----
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
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	-----
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	-----
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	-----
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 -----
취득하는 <u>자동차등의 가액이 종</u>	----- <u>자동차등에 부과되어</u>
<u>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u>	<u>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u>
<u>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u>	<u>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u>
<u>취득세를 부과한다.</u>	<u>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u>
	<u>로 부과한다.</u>

참고

과다감면 사례 및 개정 전·후 비교

< 과다 감면 예시 >

(예시) 하이브리드 승용차(K7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차량 결함이 발견되어 하이브리드가 아닌 내연기관 승용차(그래저)를 교환 취득한 경우

구분	취득	취득 가액	과세 표준	산출세액 (세율 7%)	감면	납부 세액	과다감면
취득	하이브리드 (K7)	4천만원	4천만원	280만원	40만원	240만원	40만원 (315만원-275만원)
교환	일반 (그랜저)	4.5천만원	5백만원	35만원	-	35만원	
제각결함 원인 교환 자동차 최종 납부세액						275만원	
일반 취득	일반 (그랜저)	4.5천만원	4.5천만원	315만원	-	315만원	

<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일반 취득	제작결함에 따른 교환 취득		
		취득	교환	
			현행	개정
자동차 가액	4.5천만원	4천만원	4.5천만원	4.5천만원
과세 표준	4.5천만원	4천만원	0.5천만원	4.5천만원
세율	7%	7%	7%	7%
산출세액	315만원	280만원	35만원	315만원
감면세액	—	40만원	—	
납부세액	315만원	240만원	35만원 (4.5천만원-4천만원)×7%	75만원 (315만원-240만원)
최종 납부세액	315만원		275만원	315만원

31 경형승용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법 § 67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경형승용자동차 ☐ (감면내용) 취득세 100% ☐ (감면한도) 50만원 ☐ (일몰기한) 2021.12.31.	☐ 감면한도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 (감면내용) 취득세 100% ☐ (감면한도) 75만원 ☐ (일몰기한) 2024.12.31.

☐ 개정내용

- 경형승용자동차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확대(50만원→75만원)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 ----- ----- ----- ----- ----- 2024년 12월 31일----- ----- ----- ----- ----- -----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1. ----- 75만원 ----- -----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 ----- 75만원 ----- ----- 75만원 ----- -----

3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법 § 74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구분	감면대상	감면내용
	수용 시	사업시행자	취득세 100%(동의자 ¹⁾) 취득세 50%(비동의자)
	준공 시	사업시행자	취득세 50%
	분양 시	동의자 ¹⁾	취득세 100%* * 종전 부동산 가액 한도 취득세 50~75%* * 가액 초과분에 대한 1가구1주택자

1) 사업에 동의하여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원 토지 소유자

□ 개정내용

- 공공매입 사업 시 민간 방식 대비 불리함을 완화하도록 취득세 감면
 - ① (수용) 동의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및 비동의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74의2③1)
 - * 사업에 동의하여 현물보상 약정을 체결한 원 토지 소유자
 - ② (준공)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신축,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③ (분양) 종전 부동산 가액합계 내에서는 취득세 면제하고(§74의2①), 초과분*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자 감면적용**(§74의2③3)
 - * 취득하는 건축물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 ** 전용면적 60㎡ 이하 : 75% 감면, 60㎡ 초과 ~ 85㎡ 이하 : 50% 감면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 §74의2 ②·③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은 올해 개정 추진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개정 전	개정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

개정 전	개정 후
	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

개정 전	개정 후
	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3 반환공여구역등에 기업등 설립시 감면 신설(법 § 75의4)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대상) 반환공여구역등*에 기업 등을 창업·신설 또는 이전하는 자 *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감면내용)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 (시행시기) 2023년 1월 1일

☐ 개정내용

- 반환공여구역등*에 일정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일정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 신설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감면대상 창업 업종 및 신설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공여구역) 주한미군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
 - (반환공여구역) 공여구역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 * 캠프잭슨캠프스탠리(의정부) 캠프마켓(인천 부평), 캠프워커(대구 남구) 등 80개소
- (주변지역)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연결 읍·면·동 지역으로서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공여구역주변지역) 경기 수원·성남 등 46개 시·군·구(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경기 의정부·포천 등 30개 시·군·구(178개 읍·면·동)

□ 적용요령

- 감면대상 업종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개정 전	개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대상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건축물등 -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u>공장용 건축물 포함</u>	☐ 감면대상 명확화 ○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u>산업용건축물등(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u>

☐

- 산업용건축물 등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 기존에 산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로 혼재되어 있던 용어를 ‘산업용 건축물’로 통일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wedge$

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u>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u>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u>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가. ----- ----- ----- <u>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u> -----. <u><후단 삭제></u>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3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추징요건 완화(법 § 78⑤)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추징요건 ☐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추징요건 완화 ☐ (추징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19.1.1. ~ '20.12.31. 기간에 취득한 경우는 4년으로 완화

☐ 개정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징요건 중 “3년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 '19.1.1. ~ '20.12.31. 기간에 취득한 경우는 4년으로 완화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u>3년</u>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6 법인 및 공장 지방이전 시 감면 요건 명확화법 § 79, § 80, 규칙 § 7, § 8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요건 ☐ (대상) 법인 및 공장 ☐ (요건) <u>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 대도시 외 지역 이전</u> - (대도시 정의)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	☐ 감면요건 통일 및 명확화 ☐ (대상) 법인 및 공장 ☐ (감면) 대도시 → <u>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시</u> - (대도시 정의) 현행과 같음

□ 개정내용

○ 세목과 법인/공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요건을 통일**

구분	세목	감면율	감면요건
(§79) 법인 지방 이전	취득세	면제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세목 및 법인·공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요건을 통일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등록면허세	면제	
(§80) 공장 지방 이전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 (입법취지)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 도모. 다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 법인·공장은 지방 이전 시 감면 배제(산업단지에서 既 감면 적용)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한 법인·공장에 대한 추징 등은 종전 규정 따름*
 - *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에 유의할 필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u>대도시 외</u> 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 ----- ----- <u>과밀억제권역 외</u>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법률 부칙

- 제15조(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추징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 과밀억제권역 -----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1. 과밀억제권역 -----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2. ----- 과밀억제권역 -----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3. 과밀억제권역 -----

개정 전	개정 후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과밀억제권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3. 과밀억제권역 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37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 신설(법 § 88②)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 신설 ○ (대상) 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2.12.31.

☐ 개정내용

-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최소납부세제 적용) 신설
- 유사한 성격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감면과 일몰기한 일치('22년)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개정 전	개정 후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8

1

개정 전	개정 후
□ 전자송달, 자동이체시 공제 ○ (감면내용) - 택1 <u>150원~500원</u> - 병행 <u>300원~1,000원</u>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u>공제액 인상(약 60%↑)</u> ○ (감면내용) - 택1 <u>250원~800원</u> - 병행 <u>500원~1,600원</u>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공제범위를 현실화(60%인상)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도모

*	구 분	2011년(시행당시)	2021년(현재)	인상률
	일반우편	220원	350원	59%↑
	등기우편	1,500원	2,450원	63%↑

9

- 이 법 시행('22.1.1.) 이후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부칙 제16조)

2

 $\wedge$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50원부터 500원까지</u>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1. ----- ----- ----- ----- ----- <u>250원부터 800원까지</u> ----- -----

개정 전	개정 후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9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 및 신설 (법 § 167의2, 167의3, 영 § 116의2, 법률 제12955호 부칙 § 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 (감면내용)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감면액의 10% ○ (일몰기한) 2021.12.31. ※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신설)	☐ 감면 조문 정비 및 연장 ○ (감면내용)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감면액의 10%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 ○ (일몰기한) 2023.12.31. ※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감면 신설 (§167의3, 영§116의2) ○ (감면요건)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자, 모두채움 대상 납부자 ○ (감면내용) - 종합소득 확정신고, 양도소득 예정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 2천원(납부세액 한도) -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자 (「소득세법」 §73) : 납부·환급 결정 세액 또는 1천원(min)

☐ 개정내용

-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자에 한해 지방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 일괄 감면규정(법§167의2①)에 예외를 두도록 개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신설(법§167의3)

-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납세자 본인의 신고 없이도 지자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는 **신고 간소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지자체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토록 신설**

□ 적용요령

- (법§167의3) 이 법 시행('22.1.1.)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 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11조)

②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u>이월공제를 포함한다</u>)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감면 등) ① ----- ----- ----- -----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u>2021년 12월 31일까지</u> 적용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u>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 --- 2023년 12월 31일-----</u> --.
<신 설>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 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부칙>

- 제11조(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0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조문 이동 및 적용 확대(법 § 167의4, 규칙 § 9)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167의3) ☐ (특례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 조문 이동(§167의4) 및 적용 확대 ☐ (특례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개정내용

- (조문 이동)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167의3)에 따라 **조문 이동**(§167의3 → §167의4)
 ※ 징수특례 결정·결과 및 취소 통보 및 통지서 ;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6호의2, 3, 4서식 내 “법 제167조의3”을 “법 제167조의4”로 병행 수정
- (감면 확대) 국세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가산금 면제 특례에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 ----- ----- ----- ----- ----- ----- ----- ----- ----- ----- ----- -----.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 의무 면제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u>법 제167조의3제3항</u> 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u>법 제167조의4제3항</u> ----- ----- ----- ---
② <u>법 제167조의3제4항</u> 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u>법 제167조의4제4항</u> ----- ----- ----- ----- -----.

41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명확화(법 § 177의2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세 최소납부세제(면세 → 15%과세) 적용 대상 ☐ (대상자) 산출세액 200만원 초과자 ☐ (판단기준 추가) ※ 소액 취득자는 영세성 고려, 면제	☐ 적용 대상 <u>명확화</u> ☐ (대상자) <u>좌동</u> ☐ <u>多물건</u> 취득자 등 <u>담세력 중심의 합산과세방식 도입</u>

□ 개정내용

-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제외 대상 중 취득세 세액기준 세분화
 - 토지를 분필하거나 집합건물을 호별로 나누어 계약신고하는 등의 편법*으로 **최소납부세제 회피 및 세수 일실 가능성 우려**

* (예)

구분	정상세액		⇒	악용	
	감면前	최소납부(15%)		감면前	최소납부(15%)
토지	1건×1천만원	150만원		10필지×100만원	0원
건물	1건×1억원	1,500만원		100호×100만원	0원

※ 재산세는 보유세 성격으로 등기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나, 취득세는 거래세 성격으로 충분한 담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합산과세 타당성 인정

- 편법 조개기 등 1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최소납부세제 해당 여부를 판단토록 명확화

* 「지방세법」 제6조제20호에 따른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년 이내에 ①동일한 소유자로부터의 부동산 취득 또는 ②연접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산출세액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합산 적용

※ (예시)

취득일	① '21. 10. 7.	② '22. 1. 9	③ '22. 5. 8.
산출세액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산출세액 합산은 ②와 ③에 대해서만 적용

- 최소납부세제 배제대상이었으나 1년 이내 추가 부동산 취득 등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각 과세분에 대해 세액을 적용**하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과세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접수**하되, 과소신고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57①)

※ (예시)

취득일	① '21. 10. 7.	② '22. 1. 9	③ '22. 5. 8.
산출세액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③ 시점에 ②와 ③ 각각에 대하여 15% 과세 적용(가산세 미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 ----- -----

개정 전	개정 후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u>취득세</u>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u>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결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u>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42 한지계획 취득부동산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명확화법 § 177의2①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한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 ☐ 최소납부세제 <u>적용</u>	☐ 한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 ☐ 최소납부세제 <u>미적용</u> ※ 과표공제 성격

☐ 개정내용

- **한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면제 규정**(§74①)은 **과표공제*** 성격으로서 **최소납부세제 미적용 대상임을 명확화**

* 한지계획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74①1·2)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을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서울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 ----- ----- ----- ----- ----- ----- ----- ----- ----- ----- ----- ----- -----
1. (생략)	1. (생략)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 ----- ----- ----- ----- ----- ----- ----- 제 <u>62조</u> ----- ----- ----- <u>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u>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참고

유사 감면조항 비교

- ☐ **최소납부세제 적용** : 과표 전체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주거환경개선사업(§74)

구 분	감 면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20년)
소유자	현지개량주택 또는 85㎡이하주택	☐ 100% (\$74③5) * 최소납부세제 적용('19년 ~)	<u>연 장 (\$74④3)</u> * 최소납부세제 적용

- ☐ 최소납부세제 未적용 : 과표공제 성격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73)

-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92)

-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

< 참고 : 취득세 부과 예시 >

종전 부동산	5억원	
대체취득 부동산	5억원 취득세 면제	1억원 : 취득세 부과

43 인용 법 조문 이관에 따른 정비(법 § 180의2①·②)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인용 법 조문 ☐ (감면) 지방세 중과세율 배제 ☐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인용)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 인용 법 조문 이관 ☐ (감면) 좌동 ☐ (대상) 좌동 ☐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개정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180조2①·②)가 적용되도록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규정 명확화

< 관련 법률 변동사항 >

종 전	변 경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명시

☐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지침 통보) 지방세특례제도과-142('21.1.13.)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 ----- ----- ----- 2024년 12월 31일-----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2024년 12월 31일-----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u>별표</u>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u>별표</u>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참고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현행화)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제8조의2 관련)

■ : 신설, - : 제외

시·도	농원명	소재지(일원)
서울특별시	헌인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468길 45
부산광역시	구평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144번길 10
	계림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번길 7
	삼덕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덕길 2
	낙원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공단 2길 64-20
	용호마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54
인천광역시	부평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청천마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0
	경인마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광장로 12번길 171
울산광역시	성혜마을	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레길 28-1
경기도	고운마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09-66
	동진마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1-5 3층
	염광마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8-2
	천성마을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241번길 6
	포천마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마을 1길 5
	성생마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326
	협동마을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260번길 36-51
	상록마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상록안길 15
	청산마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20
강원도	대명마을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하만중 3길 23
세종특별자치시	충광마을	세종시 부강면 등곡길 33-34
충청북도	청원마을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원통숲안길 70
충청남도	성광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598길 26-3
	영락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군장동대길 135-3
전라북도	익산마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은동길 5
	금오마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금오 1길 12
	신촌마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신촌길 49-1
	상지마을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상지원길 67
	비룡마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 3길 3
	신암마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신암길 57

	신흥마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 6길 124
	정애마을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궁동길 241-3
	보성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보성길 76-2
	신생농원	전라북도 남원시 신생길 29-39(용정동)
	성자마을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성자길 116
	동혜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호암안길 11-5
전라남도	현애마을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유현 2길 19
	호혜마을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새벽길 6-11
	여천마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289
	도성마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도성길 54-12
	영호마을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영호길 2-6
	재생마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933-50
	영민마을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덕흥 2길 2
	성진마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성진길 56
경상북도	성곡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길 182-39
	희망마을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고개길 125-4
	삼애마을	경상북도 김천시 삼애 1길 17
	광신마을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 4길 257-25
	계명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죽전길 309-11
	영천마을	경상북도 영천시 유봉길 37
	성심마을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역곡 4길 22
	상신마을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상신농장길 62-61
	금성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도경 4길 127
	경애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 6길 39-15
	신락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신락 3길 47
	신애마을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애길 83
	명진마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388
	성신마을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길 590-1
	칠곡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 2길 33
	삼청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 5길 35
	벤엘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4길 38-15
	낙산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새마을 1길 8
	갱화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명로 92-64
경상남도	소아마을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반성로 127번길 31
	신광마을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140번길 29-1
	광명마을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 22길 15-6
	영복마을	경상남도 사천시 영복 1길 74-11
	대동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227번길 12
	낙동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178번길 11-1

	덕촌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 114번길 26
	상동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473번길 370-4
	양지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길 156
	신생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107-20
	신촌마을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용덕 2길 40
	여명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여명안길 41-6
	득성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750-1
	향촌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향촌길 123-2
	소혜마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서 1길 33
	승의마을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서 5길 96
	성진마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 4길 171-8
	영신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8
	경호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134
	성애마을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530-3
	금호마을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금호길 17-10
	거창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동신길 72
	협성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58
	팔복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 1길 15-36

2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영 § 13③)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 요건으로 「민특법」 상 등록 의무 규정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 공공주택사업자는 예외 규정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 적용됨을 명시

☐ 개정내용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명문화

☐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 의무 기간 내 분양 등)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u>등록하여야</u> 한다. <u><단서 신설></u>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 의무 기간 내 분양 등) ③ ----- ----- ----- ----- ----- ----- 등록해야 ----- .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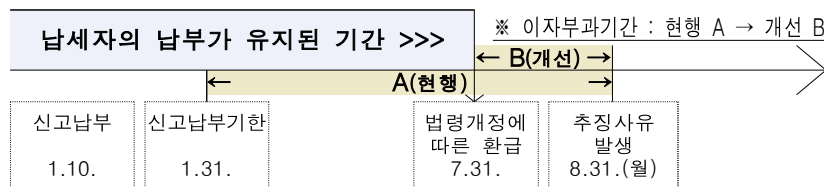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추정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 납부기한 다음날(기산일)부터 추정사유 발생 시까지의 기한을 기준으로 적용	□ <u>이자상당가산액 기산일 합리화</u> ○ (원칙) 좌 동 ○ (예외) 일부 사유*에 대해 별도 <u>기산일 적용(환급가산금과 일치)</u> * (예) 경정 청구에 따른 감면 : 지방세 납부일

□ 개정내용

-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 신설
- 이자상당액 적용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 사례를 반영하기 위함

※ (예시)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환급 받은 후, 추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납부했던 기간까지도 산입



⇒ 2.1.~7.31.은 납부가 유지된 기간임에도 **현행규정상** 이자상당가산액 기간은 8.1.~8.31.이 아닌 2.1.~8.31.

-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 후 환급 등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

* (지방세기본법 §62①) 환급 발생시 납세자에게 더해 주는 이자상당액

※ (동일적용 취지) 납부가 유지된 기간은 이자상당가산액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그 중 환금가산금을 지급한 기간은 포함

※ 주요 환급가산금 기산일(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3① 각 호)

- ✓ 경정 청구에 따라 감면시 : 지방세 납부일
- ✓ 적법하게 납부 후 지방세 감면시 : 그 결정일
- ✓ 적법하게 납부 후 법령·조례 개정시 : 그 법령·조례 시행일

적용요령

- 이 영 시행('21.1.1.) 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충당한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개정 전	개정 후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 ----- ----- ----- -----.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단서 신설>	1. ----- ----- ----- ----- .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개정 전	개정 후
2. (생 략)	<u>한다.</u> 2. (현행과 같음)

〈부칙〉

- 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 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충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 고 자 료

감면내용	조문	세목		적용시기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4 노동조합	§26	○	○	'16.1.1.
5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②1,④1	○	○	
6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	○	
7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8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9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0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1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		
12 경차	§67②	○		
13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택 (85㎡이하)	§81③2	○		
14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1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갯생보호시설	§85①	○	○	
16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21년까지 적용)	§47의4①2	○	○	
17 국제선박	§64①,②,③	○		
18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19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		
20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21년까지 적용)	§13②1의2호		○	'17.1.1.
21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	○	
22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의2	○	○	
23 신탁·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	○	'18.1.1.
24 지역아동센터	§19의2	○	○	
25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의3		○	

감면내용	조문	세목		적용시기
		취	재	
26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의2	○		'19.1.1.
27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42②	○	○	
28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	○	○	
29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의2③7	○		
30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의2⑤	○		
31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③1의2호		○	
32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주택 (85㎡이하)	§74④3	○		
33 법인의 지방이전	§79①	○	○	
34 공장의 지방이전	§80①	○	○	
35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83②	○		
36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의2	○		'20.1.1.
37 사회복지법인	§22①,②	○	○	
38 별정우체국	§72②		○	
39 지방공단	§85의2②	○	○	
40 새마을운동조직	§88①	○	○	
41 정당	§89	○	○	
42 마을회	§90	○	○	
43 수소전기버스	§70④	○		
44 장학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45②1	○	○	
45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조특법 적용대상은 제외)	§78의3	○	○	
46 생애 최초 주택	§36의3①1	○		'20.7.10.
47 전공대학	§44②	○	○	'21.1.1.
48 농협 등 조합간 합병	§57의2②	○		
49 농협·수협조합의 부실조합 재산 양수 등	§57의3①	○		'22.1.1.
5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재취득	§57의3④	○		
51 한국자유총연맹	§88②	○	○	'23.1.1.
52 지방농수산물공사	§15②	○	○	
53 도시철도공사	§63⑤	○	○	
54 반환공여구역내 창업용 부동산('23년 시행)	§75의4	○		